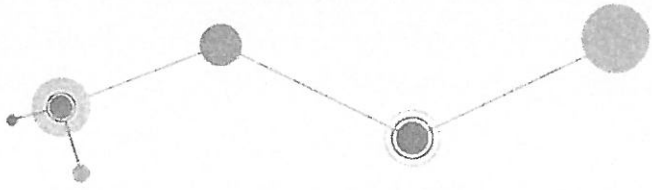
중국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초안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管理条例（草案） （征求意见稿）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초안) (공개 의견 자문 초안)
目 录 第一章 总则 第二章 监督管理 第三章 生物遗传资源的获取 第四章 生物遗传资源的惠益分享 第五章 生物遗传资源的出境管理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章 附则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감독·관리 제3장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제4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제5장 생물유전자원의 입출경 관리 제6장 법적 책임 제7장 부칙
第一章 总 则	**제1장 총칙**
第一条【立法目的】为了加强生物遗传资源获取和惠益分享管理，保护和持续利用生物多样性，履行《〈生物多样性公约〉关于获取遗传资源和公正公平分享其利用所产生惠益的名古屋议定书》，维护国家利益，制定本条例。	**제1조 [입법 목적]** 이 조례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관리 강화, 생물다양성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국가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第二条【适用范围】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管辖的其他海域内生物遗传资源及相关传统知识的获取和惠益分享活动。法律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本条例关于生物遗传资源的规定，同样适用于生物遗传资源相关传统知识（以下简称为“传统知识”），关于传统知识有明确规定的除外。 本条例所称“生物遗传资源”，是指具有实际或潜在价值的来自植物、动物、微生物或其他来源的任何含有生物遗传功能单位的材料、衍生物及其产生的信息资料（不包括人类遗传资源）。 本条例所称“生物遗传资源相关传统知识”，是指各族人民及地方社区在长期的传统生产生活实践中创造、传承和发展的，有利于生物遗传资源保护和可持续利用的知识、创新和做法。 本条例所称“衍生物”，是指由生物遗传资源的遗传表达或新陈代谢产生的生物化学物质，以及直接以天然产物进行结构改造的类似物或利用生物遗传资源及其信息人工合成的化合物。 本条例所称“惠益”，是指获取和利用生物遗传资源所产生的货币或非货币收益。 本条例所称“外方单位”，是指境外组织，或境外组织、个人在中国投资设立的法人或其他组织。 本条例所称“商业目的”，是指以营利为目的获取或利用生物遗传资源，不包括农民、牧民、渔民等主体依照传统方式获取或利用生物遗传资源的活动。 本条例所称“传统方式”，是指各族人民和地方社区依据传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기타 관할 해역 내에서의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활동에 적용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하에서 '전통지식'라 칭함)에도 적용되나 전통지식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생물유전자원'이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기타 물질로부터 나온 모든 생물유전 기능적 단위를 포함한 재료·파생물 및 이들로 생성된 정보자료(인류유전자원 제외)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장기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산·생활의 실천을 창조·계승·발전해 온 각 민족 및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 및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파생물'이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적 표현·신진대사로 형성된 생물화학물질 및 천연산물의 구조변경으로 형성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생물유전자원의 정보로 인공으로 합성된 화합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이익'이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외방 단위'이란 해외 조직 또는 해외 조직 및 개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직을 말한

统规则、惯例、习俗和做法，取得或利用生物遗传资源的方式、方法和途径。	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상업적 목적'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것, 농민·목민·어민 등의 전통방식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행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례에서 칭하는 '전통방식'이란 각 민족 및 지역사회에서 전통규칙·관례·습속·행동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방식·방법·수단을 말한다.
第三条【基本原则】获取和利用生物遗传资源，应当遵循国家主权、保护优先、事先知情同意、科学合理利用、公平分享惠益的原则。	**제3조 [기본원칙]**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용은 국가주권, 우선보호, 사전 동의, 과학적·합리적 이용, 공평한 이익 공유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第四条【调查和保护规划】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制定实施全国生物遗传资源保护与利用规划，每五至十年开展全国生物遗传资源获取、惠益分享和出境调查，建立和更新国家生物遗传资源数据库。 省级人民政府制定本行政区的生物遗传资源保护与利用规划，将其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将相关保护和管理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	**제4조 [조사 및 보호 규획]**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전국적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규획을 제정하고,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전국적 생물유전자원 접근·이익 공유 및 국외반출 조사를 실시하며 국가차원의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건립 및 갱신한다. 성(省)급 인민정부는 관할 행정구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용 규획을 제정하고, 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키며 관련 보호 및 관리 경비를 지역 재정예산에 편성한다.

第五条【传统知识保护】国家建立传统知识保护制度，鼓励和支持传统知识的保护、传承和利用。	**제5조 [전통지식의 보호]** 국가는 전통지식 보호제도를 구축하고 전통지식의 보호·계승·이용을 장려·지원한다.
第六条【传统知识登记】省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对本行政区内处于公共领域而且可公开获取的传统知识进行登记，并定期将登记信息上传至国家生物遗传资源数据库。 国家鼓励其他类型传统知识的持有人向省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登记传统知识。尚未公开的传统知识，在登记时应作保密处理。传统知识登记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规定。	**제6조 [전통지식의 등기]**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의 공공영역에 속하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통지식을 등기하고, 관련 등기정보를 정기적으로 국가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에 올린다. 국가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전통지식을 등기하는 기타 유형의 전통지식 점유자의 행위를 장려한다. 공개되지 않는 전통지식의 등기는 비밀로 진행된다. 전통지식 등기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실시 절차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규정한다.
第七条【传统知识集体管理】已登记的传统知识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指定的集体管理组织进行集体管理。 传统知识集体管理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规定。	**제7조 [전통지식의 집단관리(집합관리)]** 이미 등기된 전통지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지정된 집단관리 조직에서 집단으로 관리한다. 전통지식의 집단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및 실시 절차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규정한다.
第八条【科研、教育和宣传】国家鼓励和支持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相关的科研、教育和宣传活动。	**제8조 [과학연구·교육·홍보]** 국가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과학연구·교육·선전 활동을 장려·지원한다.

第九条【公众参与】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生物遗传资源的义务。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向生物遗传资源相关主管部门举报生物遗传资源违法获取和惠益分享等行为。	제9조 [국민 참여]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위법한 접근·이익 공유 등의 행위를 생물유전자원 관련 주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第十条【禁止、限制性活动】生物遗传资源的采集活动不得影响野生种群的遗传完整性及其正常生长。生物遗传资源的获取和利用活动不得损害人类健康和生态安全，不得对生物多样性造成严重损害。 规划、建设项目和区域开发等活动，应当考虑对生物遗传资源及其天然集中分布区可能产生的不利影响。	제10조 [금지·제한 활동] 생물유전자원의 채집행위는 야생종군의 유전적 완전성 및 그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용 행위는 인류의 건강·생태계 안전을 침해하거나 생물다양성을 중대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규획·건설 사업·구역 개발 등 활동을 진행할 경우 생물유전자원 및 생물유전자원 천연 집중분포 구역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第二章 监督管理	**제2장 감독·관리**
第十一条【管理职责】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对生物遗传资源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农业、林业、住建、卫生计生、海洋、中医药等相关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生物遗传资源实施监督管理。国务院工商、商务主管部门负责生物遗传资源市场管理，国家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进出境检验检疫部门负责生物遗传资源出境管理，国务院教育、科技主管部门负责生物遗传	**제11조 [관리 직책]**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농업·임업·주건·위생 및 계획 출산·해양·중의약 등 관련 주관 부서는 각 직무 범위에 한하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공상·상무 주관 부서는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시장 관리,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는 생물

资源科研开发管理，知识产权主管部门负责生物遗传资源知识产权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对本行政区生物遗传资源实施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生物遗传资源实施监督管理。	유전자원에 대한 입출경 관리, 국무원 교육·과학기술 관리부서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리, 지식재산권 주관 부서는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县)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관할 행정구역에 한하여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통일적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각 직무 범위에 한하여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第十二条【协调机制和咨询机制】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建立生物遗传资源部际协调机制，组织协调生物遗传资源保护和管理工作。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成立国家生物遗传资源专家委员会，就生物遗传资源重大政策制度、规划计划及审批事项提出咨询意见。 省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根据实际需要，参照本条的规定，设立相应的机制。	**제12조 [조정·자문 시스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 부처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보호·관리 업무를 조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중요한 정책제도, 규획·계획 및 심사·비준 사항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본 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상응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第十三条【信息交换机制】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承担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国家联络点职能，建	**제13조 [정보교환시스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 연락기관의 역할을

立信息交换机制，发布获取与惠益分享相关信息。 信息交换机制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另行规定。	담당하여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공포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정보교환시스템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법을 별도로 공동 제정한다.
第十四条【检查机构】国务院农业、林业、海洋、中医药、教育、科技、知识产权主管部门，国家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进出境检验检疫部门等应当指定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检查点，按照各自职责，相互配合，审查生物遗传资源获取、利用和出境的合规情况，并通过信息交换机制定期将相关信息和资料抄送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제14조 [검사기관]** 국무원 농업·임업·해양·중의약·교육·과학기술·지적재산권 주관 부서,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 검사지점(체크 포인트)을 지정하고, 부서별 기능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입출경 상황을 검사한다. 또한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第十五条【监督检查机制】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建立监督和检查制度，定期对生物遗传资源获取和惠益分享活动进行监督和检查，及时通报违法违规行为，并通过信息交换机制公开。 省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联合同级相关主管部门制定本行政区的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监督检查制度，定期向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提交年度报告。	**제15조 [감독·검사제도]**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감독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정기적 감독·검사, 위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통보 및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업무를 진행한다.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동급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관할 행정구역에 한하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감독·검사규정을 제정하여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정기적으로 연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第十六条【执法检查措施】省级以上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开展生物遗传资源获取和惠益分享监督检查时，可以采取下列措施： （一）进入现场检查； （二）查阅、复制有关资料； （三）询问相关人员； （四）法律、法规规定的其它措施。 相关单位和个人应当向检查机关及其工作人员如实反映情况，积极配合检查工作，提供必要的资料。检查机关及其工作人员应当依法保守被检查单位和个人的技术和业务秘密。	**제16조 [집법검사조치]** 성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 진입 검사 2.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4. 법률, 법규에 따른 기타 조치 관련 단위 및 개인은 검사기관 및 검사 공무원에게 진실 된 정보 및 필수자료를 제공하고 검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검사기관 및 점검 공무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피검사 단위 및 개인의 기술 및 업무비밀을 유지해야한다.
第十七条【失信名单制度】国家建立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失信名单制度，及时通报违法违规行为和违法主体名单，将相关单位和个人的违法信息记入责任主体的信用记录，及时通过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予以公开。	**제17조 [신용상실 명단제도(신용 블랙리스트제도)]** 국가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신용상실 명단제도를 마련하여 위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와 위법주체의 명단 정보를 통보하고,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위법행위 정보를 책임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하여 전국 신용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한다.
第三章 生物遗传资源的获取	**제3장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第十八条【原则性规定】获取生物遗传资源，应当事先征得生物遗传资源持有人的同意，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并根据本条例和其它法律法规的相关规定履行登记或审批手续。 无明确生物遗传资源持有人的，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相关主管部门指定专门机构和获取人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	**제18조 [원칙적 규정]**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 조례 및 기타 법률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등기 또는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명확한 생물유전자원 점유자가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관련 주관 부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第十九条【我国主体获取】我国单位和个人为学术研究目的获取生物遗传资源，应当向生物遗传资源所在地县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登记。县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应将相关资料定期报送上级主管部门。 我国单位和个人为商业目的获取生物遗传资源，应事先征得生物遗传资源持有人同意，并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报省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审批。省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应将相关资料抄送同级环境保护主管部门。	**제19조 [국내 주체의 접근]** 중국 국내 단위 및 개인이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할 경우 생물유전자원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관련 자료를 상급 주관 부서에 정기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국내 단위 및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할 경우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관련 자료를 동급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第二十条【外方单位获取】外方单位和个人获取和利用我国生物遗传资源，应当与我国单位进行合作，在我国境内进行，由我国人员参与实质性研究开发利用活动。 外方单位和个人获取我国生物遗传资源，应当事先征得生物遗传资源持有人的同意，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报国务院相关主管部门审批。国务院相关主管部门应在作出审批决定后十日内将相关资料抄送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제20조 [외방 단위의 접근]** 외방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할 경우 중국의 단위와의 공동 협력, 중국 국내에서의 협력활동 진행, 연구·개발 이용 활동에 관한 중국 인원의 실질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외방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할 경우 생물유전자원 점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심사·비준 결정을 내린 후 10일 이내 관련 자료를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야 한다.
第二十一条【申请材料】获取人应当向相关主管部门提交以下材料： （一）获取与惠益分享协议； （二）生物遗传资源持有人合法持有生物遗传资源的情况证明； （三）转让或获取目的转变时还需提交原始获取与惠益分享协议； （四）第二十条第一款规定的中外合作情况证明； （五）其它必要材料。 生物遗传资源获取人应当提交真实、完整的书面材料。获取人提交材料不真实、不完整的，受理申请的主管部门可以要求获取人在十日内修改或补充材料，重新提交	**제21조 [자료 신청]** 이용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접근·이익 공유에 대한 합의서 2.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점유자의 합법적 점유정보 설명 3.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양도 또는 접근 목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시적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의 제출 4.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협력 상황 설명 5. 기타 필요한 자료 생물유전자원 이용자는 진실·완전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수리기관은 이용자에게 10일 이내의 자료 수정 또는 보완을 통한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 기간 경과 후 해당 자료가

申请。该期限届满后申请材料未修改或补充完整的，视为撤销申请。	수정 또는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취소한다.
第二十二条【申请的登记、公告和异议】获取人提交真实、完整书面申请材料的，相关主管部门应当受理和登记，并应在收到申请材料之日起五个工作日内，公布申请书摘要，供公众查阅。摘要应当包括获取与惠益分享协议的当事人及其主要权利和义务、合同期限等内容，依法应予保密的数据和信息除外。 任何单位和个人可以向相关主管部门申请查阅申请书摘要，并可以在申请书摘要公布之日起十五日内向相关主管部门提出异议。	**제22조 [신청의 등기, 공고 및 이의]**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가 진실·완전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이를 수리 및 등록하고 신청 자료 접수일로부터 5 업무일 내에 신청서 요약서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 요약서에는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협의 당사자의 정보 및 당사자의 주요 권리의무, 계약 기간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비밀 유지를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제외된다. 모든 단위 및 개인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신청서의 요약문을 열람할 수 있고, 또한 신청서 요약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주관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第二十三条【审批的期限】受理获取申请的主管部门应当自受理之日起的二十个工作日内作出是否予以批准的决定。公告期不计入上述工作日。	**제23조 [심사·비준의 기한]** 접근 신청을 수리한 주관 부서는 수리일로부터 20 업무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은 위의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第二十四条【获取的禁止性条款】对涉及下列情形之一的，受理申请的主管部门不予批准： （一）申请人未征得持有人的事先知情同意并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的； （二）对生物遗传资源所在地区的生物多样性或者社会	**제24조 [접근에 관한 금지 조항]** 접수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준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점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를 체결한 경우 2. 생물유전자원 소재 지역의 생물다양성 또는 사회경제문화

经济文化可能产生负面影响的； （三）损害人类健康、生态安全或国家利益的； （四）获取与惠益分享协议显失公平的； （五）违反我国相关法律或我国批准和加入的相关国际条约的； （六）主管部门有其他合理理由的。 受理申请的主管部门不予批准的，应当书面说明理由。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인류의 건강, 생태계 안전, 국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체결한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한 경우 5. 중국의 관련 법률 또는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에 위반 되는 경우 6. 주관부서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인정한 기타 경우 주관 부서는 수리된 신청을 비준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第二十五条【生物遗传资源国际证书】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当事人的申请，依据相关主管部门获取登记和审批的备案信息，出具生物遗传资源国际证书，并通过信息交换机制发布。 国际证书的内容应包括： （一）颁发证书的主管部门及颁发时间； （二）证书涉及的主题事项； （三）获取与惠益分享协议的审批部门及批准时间； （四）生物遗传资源的直接来源或原产地； （五）生物遗传资源提供人详细信息； （六）生物遗传资源获取人详细信息；	**제25조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인증서]**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의 등기 및 심사·비준에 관한 등록정보에 의거하여 생물유전자원 국제인증서를 발급하고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국제인증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발급 주관 부서 및 발급 시간 2. 인증서 관련 사항 3. 접근·이익 공유 협의에 관한 심사·비준 부서 및 비준 시간 4. 생물유전자원의 직접출처 또는 원산지 5.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의 상세 정보 6.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의 상세 정보

（七）获取与惠益分享协议摘要； （八）获批准的用途； （九）向第三方转让的条件； （十）转让、出境情况； （十一）其它相关事项。 生物遗传资源国际证书的具体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另行规定。	7. 접근·이익 공유 협의의 요약 내용 8. 접근 목적 9. 제3자에 대한 양도 요건 10. 양도, 국외반출 상황 11. 기타 관련 사항 생물유전자원 국제인증서의 구체적 형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第二十六条【获取目的转变】获取生物遗传资源后，由学术目的转变为商业目的的，应当依照本条例的相关规定重新办理审批手续。	**제26조 [접근목적의 변경]**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한 후 그 접근 목적이 학술적 목적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된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第二十七条【已获资源的转让】转让本条例生效前已获取生物遗传资源的，受让方应当依照本条例的相关规定办理登记或审批手续。 转让本条例生效之后获取的生物遗传资源的，受让方应当依照本条例的相关规定办理变更手续。	**제27조 [접근된 생물유전자원의 양도]** 이용자가 이 조례 발효 전에 접근한 생물유전자원을 양도할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시 등기 또는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용자가 이 조례 발효 후에 접근한 생물유전자원을 양도할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第二十八条【获取人的建档义务】获取和利用我国生物遗传资源的机构和个人，应将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相关资料和信息建档备查。	**제28조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의 정보 데이터화 기록의무]**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등록해야 한다.
第二十九条【来源披露义务】依赖我国生物遗传资源完成的成果申请知识产权，申请人应当出具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合法证明。不予披露的，相关主管部门应当不授予知识产权。	**제29조 [출처공개의무]** 중국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완성된 성과를 지식재산권 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지식재산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第三十条【例外程序】爆发大规模流行性病疫等紧急或突发事件，相关单位需要迅速获取生物遗传资源用于疫苗、药品研发等应急处置的，可以向省级相关主管部门登记。该单位应当在登记之日起三个月内依照第十九条或第二十条的规定补办审批手续。 农民、牧民、渔民等依照传统方式在日常生活中获取和利用生物遗传资源的，在不对生物多样性造成损害的前提下，无需履行本条例规定的登记和审批手续。	**제30조 [예외적 절차]** 관련 단위는 대규모 유행성 질병의 발생 등 긴급상황 또는 돌발사건이 발생하여 신속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을 통한 백신, 의약품 연구 개발 등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성급 관련 주관 부서에 등기할 수 있다. 당해 단위는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농민·목민·어민 등이 전통방식에 따라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하는 경우, 생물다양성에 대한 손해가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 등록 및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第四章 生物遗传资源的惠益分享	**제4장 생물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第三十一条【获取与惠益分享协议】获取与惠益分享协议应当明确约定生物遗传资源的用途、惠益的形式、比例、分配方式、获取目的转变后的惠益安排等。	**제31조 [접근·이익 공유 협의]** 접근·이익 공유 협의에 생물유전자원의 용도, 이익 공유의 형식, 이익 공유의 비율, 이익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制定获取与惠益分享协议模板。	배분의 방식, 접근 목적 변경 후의 이익 공유 배정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 양식을 제정한다.
第三十二条【惠益形式】惠益应包括货币惠益和非货币惠益。 货币惠益可以采用以下形式： （一）调查采集费； （二）使用费； （三）商业许可费； （四）商业利润； （五）科研资助费； （六）联合投资； （七）为生物遗传资源原始提供地区提供奖学金、助学金或财政援助； （八）其他货币惠益。 非货币惠益可以采用以下形式： （一）参与科研或产品研发； （二）共享研究成果的知识产权； （三）提供专业人员培训； （四）以优惠条件转让技术；	제32조 [이익의 형식] 이익은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눈다.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1. 조사 채집료 2. 사용료 3. 상업 허가료 4. 상업적 이윤 5. 과학기술연구 보조비 6. 협력(연합) 투자 7. 생물유전자원 원시출처 지역에 장학금·학자금·재정 지원 8. 기타 금전적 이익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1. 과학기술연구 또는 제품 연구개발의 참여 2. 연구 성과에 관한 지적재산권 공유 3.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지원 4. 기술이전 시의 특혜조건 제공
（五）以成本价提供相关产品或服务； （六）项目合作； （七）为生物遗传资源原始提供地区提供就业岗位，以及其他能够推动当地经济发展的方式； （八）其他非货币惠益。	5.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제공 6. 사업 협력 7. 생물유전자원의 원시출처 제공지역을 위한 일자리 제공, 기타 현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방식 9. 기타 비금전적 이익
第三十三条【生物遗传资源保护和惠益分享基金】国家设立生物遗传资源保护和惠益分享基金，纳入财政预算管理。 获取人应按年度将获取和利用生物遗传资源所产生利润的0.5－10%作为国家应得惠益直接缴存至生物遗传资源保护和惠益分享基金。 生物遗传资源保护和惠益分享基金应当用于生物遗传资源的保护和可持续利用活动，并优先用于支持生物遗传资源原始提供地区的社会经济发展事业。 生物遗传资源保护和惠益分享基金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财政主管部门商国务院相关主管部门制定。	제33조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 공유 기금] 국가는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 공유 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한다. 이용자는 연도별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0.5%-10%를 국가 이익으로 하여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 공유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 공유 기금은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이용 활동에 활용되어야 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원시출처 제공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 공유 기금에 관한 구체적 관리방안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국무원 재정부, 국무원 주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第三十四条【相关主体的利益保护】生物遗传资源持	제34조 [관련 주체에 대한 이익 보호] 생물유전자원 점유자

有人和所有权人或原始提供人等不一致的，获取与惠益分享协议应当充分考虑生物遗传资源所有权人和原始提供人等的利益，明确生物遗传资源所有权人和原始提供人分享惠益的方式、形式和比例等。	와 소유권자 또는 원시제공자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체결된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에 이들의 이익 공유의 방식, 이익 공유의 형식, 이익 공유의 비율 등 내용을 명확해야 한다.
第三十五条【集体管理组织惠益再分配】传统知识集体管理组织代表已登记传统知识的持有人签订获取与惠益分享协议。集体管理组织应当将依据协议所得惠益在扣除规定的管理费用后分配给已登记的持有人，并对外公示相关信息。协议所涉传统知识的未登记持有人，在公示之日起六个月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提出申请，经省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审查合格的，有权参与所得惠益的分配。	**제35조 [집단관리조직의 이익 공유에 관한 재배분]**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이 등기된 전통지식 점유자를 대신하여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은 규정된 관리비용을 제외된 취득 이익을 등록된 점유자에게 재배분하고 대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전통지식 미등록 점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한 후, 성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의 심사 합격 결정에 따라 이익 배분에 참여할 수 있다.
第五章 生物遗传资源的出境管理	**제5장 생물유전자원의 입출경 관리**
第三十六条【出境许可】运送、邮寄、携带我国生物遗传资源出境的，应当根据相关法律法规的规定向国务院相关主管部门申请，取得生物遗传资源出境证明。国务院相关主管部门应将出境审批信息及时抄送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国家进出境检验检疫部门和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备案。	**제36조 [국외반출 허가]** 생물유전자원을 운송·우송·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을 하여 생물유전자원 국외반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는 국외반출 심사·비준 정보를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에 신속히 발송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申请人应将出境生物遗传资源的复份材料提交至国务院相关主管部门指定的保藏机构保存，并凭生物遗传资源出境证明办理检验检疫手续。 国家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凭生物遗传资源出境证明、进出境检验检疫部门出具的出境货物通关单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出具的生物遗传资源国际证书办理验放手续。 我国单位和个人因国际科研合作而利用我国生物遗传资源，确需运送、邮寄、携带我国生物遗传资源出境的，应将出境计划报国务院相关主管部门审批。	신청인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자료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로부터 지정 받은 보존 기관에 제출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생물유전자원 입출경 인증서를 지참하여 검사·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은 생물유전자원 입출경인증서와 입출경검사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수출화물통관증 및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생물유전자원 국제인증서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중국 단위 또는 개인이 국제적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위하여 중국 생물유전자원의 이용 및 국외반출을 필요로 할 경우, 국외반출 계획서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로부터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第三十七条【出境检验查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制定生物遗传资源出境管制名录。国家进出境检验检疫部门和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依法对出境管制名录内的生物遗传资源进行查验和监控。 国家进出境检验检疫部门和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应当依法对出境的生物遗传资源进行符合性检查或复核鉴定。	**제37조 [국외반출 검사]**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생물유전자원 입출경 관리 제한 목록을 작성한다.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입출경 관리 제한 목록에 포함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는 국외반출된 생물유전자원에 대해 적합성평가 또는 복합적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第三十八条【报告义务】向境外输出生物遗传资源的机构和个人，应当在通关时主动向海关申报，并按审批部门要求的期限报告生物遗传资源研究、开发利用和惠益分享等活动的开展情况。	제38조 [보고의무] 생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통관 시 자발적으로 해관신고를 하고 심사·비준 기관의 규정 기한 내에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연구, 개발 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第六章 法律责任	**제6장 [법적 책임]**
第三十九条【行政处罚】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相关生物遗传资源主管部门责令相关单位或个人停止使用，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将违法信息记入责任主体的信用记录，并视情节处以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罚款： （一）未经批准擅自获取生物遗传资源的； （二）未经批准擅自改变用途的； （三）未经批准擅自转让生物遗传资源或相关研究成果的； （四）未按照协议约定履行惠益分享义务，经催告仍不履行的； （五）未经批准擅自向境外输出生物遗传资源的； （六）获取人拒绝接受生物遗传资源主管部门执法检查，或未按照规定向相关主管部门汇报协议履行等情况，经催告仍不履行的；	**제39조 [행정 처벌]**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사용 금지, 위법소득 및 불법 재물 몰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법한 정보를 책임 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을 접근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않고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3. 비준을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 또는 관련 연구 성과를 양도한 경우 4. 이익 공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최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당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비준을 받지 않고 생물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경우 6.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의 법적 검사를 거절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부서에 협의에 관한 이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아 최고를 받았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생물유전자원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七）其他违反生物遗传资源管理规定的行为。	
第四十条【加重情节】前述违法行为有下列情节之一的，由相关主管部门责令相关单位或个人停产停业，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吊销生物遗传资源获取证明文件，剥夺生物遗传资源获取资格，将违法信息记入责任主体的信用记录，并处违法所得三倍以上五倍以下或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罚款，以较高者为准： （一）违法行为涉及的生物遗传资源被列入出境管制名录或具有重要价值的； （二）违法行为造成了生物遗传资源的永久损失的； （三）违法行为损害了国家生态安全的； （四）非法经营数额在二十五万元以上或者违法所得数额在十五万元以上的； （五）主管部门认为应当考虑的其他严重情节。	**제40조 [가중처벌의 경우]** 전술한 위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영업정지, 위법소득 및 불법 재물 몰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증명 문서 회수, 생물유전자원 취득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법한 정보를 책임 주체의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또한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또는 20만 위안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양자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정한다. 1. 위법행위 대상인 생물유전자원이 입출경 관리 제한 목록 대상이거나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경우 2. 위법행위로 인한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적 손실 3.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 생태계 안전의 침해 4. 불법경영의 액수가 25만 위안 이상 또는 위법소득 액수가 15만 위안 이상인 경우 5. 기타 엄중한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第四十一条【出境处罚】违反本条例规定，运送、邮	**제41조 [국외반출 처벌]**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유

寄、携带生物遗传资源出境的，国家进出关境监督管理机关和进出境检验检疫部门应当将该生物遗传资源扣留，并移送国务院相关生物遗传资源主管部门处理。	전자원을 운송·우송·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입출경감독관리기관 및 입출경검사검역부서는 당해 생물유전자원을 압수하고 국무원 관련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第四十二条【主管部门责任】相关主管部门不依法作出行政许可决定，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不予查处，或者有其他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行为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相关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제42조 [주관 부서의 책임]** 관련 생물유전자원 주관 부서가 행정허가결정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주관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분을 가할 수 있다.
第四十三条【集体管理组织责任】传统知识集体管理组织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罚： (一) 签订的获取与惠益分享协议有失公平的； (二) 未将所得惠益分配给已登记的传统知识持有人的； (三) 未对外公示相关惠益分配信息的； (四) 其他违反传统知识集体管理组织设立宗旨的行为。	**제43조 [집단관리조직의 책임]** 집단관리조직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기일 지정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주관 책임자 또는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처벌을 가한다. 1. 체결한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의 내용이 불공평한 경우 2. 취득한 이익을 등기된 전통지식 점유자에게 공유하지 않는 경우
	3.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전통지식 집단관리조직 설립목적에 위반한 경우
第四十四条【民事责任、争议解决和公益诉讼】违反本条例规定，给生物遗传资源所有权人、持有人和原始提供人等主体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生物遗传资源获取与惠益分享协议在履行过程中发生的争议，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当事人可以请求省级以上相关主管部门进行处理，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违反本条例规定，造成生物多样性破坏的，符合法律规定的主体可以提起环境公益诉讼。	**제44조 [민사책임, 분쟁 해결 방법 및 공익소송]**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유전자원 소유권자, 점유자와 원시제공자 등 주체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당사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이익 공유 협의서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성급 이상의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 청구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직접 제기할 수 도 있다.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다양성이 파괴된 경우, 제소권이 있는 주체는 환경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四十五条【刑事责任】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应当依法追究刑事责任。	**제45조 [형사책임]**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의법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七章 附 则	**제7장 부칙**
第四十六条【过渡条款】在本条例生效之日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在六个月内办理获取登记和审批手续：	**제46조 [경과규정]** 이 조례의 발효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등기 및 심사·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一）継续获取或利用生物遗传资源的； （二）生效前已获生物遗传资源的用途发生改变的； （三）转让生效前已获生物遗传资源的研究成果或者申请知识产权的。	1. 생물유전자원을 계속적으로 접근·이용한 경우 2. 이 조례 발효 전에 접근·취득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용도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 조례 발효 전에 취득한 생물유전자원 관련 연구 성과를 양도하거나 특허출원을 한 경우.
第四十七条【实施细则】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需要会同国务院相关主管部门制定。	**제47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세칙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한다.
第四十八条【施行日期】本条例自 年 月 日起施行。	**제48조 [시행일]** 이 조례는 년 월 일부터 실행한다.